



중 랑 구



수신 장기요양기관 236개소

(경유)

제목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 내 급여외행위 금지 안내 및 협조 요청

1. 귀 기관의 노고와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.
2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8조의2(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) 및 보건복지부 고시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, 장기요양요원은 급여 제공시간 동안 수급자의 신체·가사·일상생활 지원 등 정해진 급여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3. 최근 일부 현장에서 급여 제공시간 중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적인 물품 판매, 구매 권유 등 영리 목적의 활동과 관련된 민원이 확인되고 있어,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수급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소속 종사자에 대한 지도·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주요 안내사항
 - 가.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 내 급여 외 행위 제공 금지 준수
 - 1) 수급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물품(건강식품, 생활용품 등) 판매 및 구매 권유 등 장기요양급여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 행위 및 영리활동 금지
 - 나. 수급자 권익 보호 및 서비스 품질 관리
 - 1) 수급자의 정서적 안정과 신뢰를 저해하거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. 끝.

중 량 구 청 장



주무관 김 별 어 르 신 재 가 복 이지은 어 르 신 복 지 과 07/28
지 탐 장 장 代 이 진 수

협조자

시행 어르신복지과-17615 (2026. 7. 30.) 접수 ()
우 02043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(신내동) / <https://www.jungnang.go.kr>
전화 02-2094-1583 /전송 02-490-4649 / kimsta@jn.go.kr / 비공개(5)